

「교원 업적평가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2. 14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24. 2. 5. 개정 판 (시행 2024. 3. 1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13/compare?from=1296&to=175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8:15:1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설치)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, 그 기능(역할)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2-02-14>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소속교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각 학부 교원 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.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제4조(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)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, 그 기능(역할)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2-02-14>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-02-05>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고, 연구산학부처장, 교수지원팀장, 연구산학팀장, 교목팀장, 교수지원담당, 연구산학담당으로 위원을 구성한다. <개정 2024-02-05> 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5조(평가위원회의 기능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.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.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	제5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24-02-05> 1.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 2.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 3.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[제목개정: 2024.02.05.]
제6조(평가위원회의 운영)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	제6조(실무위원회의 운영)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 위원장이 평가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[제목개정: 2024.02.05.]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 업적평가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교원업적평가 실무위원회의 설치) ① 소속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교원업적평가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두며, 그 기능(역할)을 교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으로 하고, 연구산학부처장, 교수지원팀장, 연구산학팀장, 교목팀장, 교수지원담당, 연구산학담당으로 위원을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소속 교원의 정기 업적평가
2.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업적평가
3.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[제목개정: 2024.02.05.]

제6조의 제목 "평가위원회의 운영"을 "실무위원회의 운영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"평가위원회"를 각각 "실무위원회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